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산업단지(○○·○○ 0지구)에서 발파암 매각 추진 소홀

기 관 명 울산광역시(○○○○○○○)

내 용

울산광역시○○○○에서는 ○○군 ○○읍 일원에 산업단지(A=1,225,375.5 m²)를 조성하기 위하여 ○○○○(주) 외 5개사와 2012. 12. 23.부터 2018. 9. 30. 까지 개발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다.

또한 “○○○○산업단지 ○○·○○ 0지구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2012. 11. 23.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 외 2개사와 4,729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18. 9. 30.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과 그 종물(從物)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계약법」에 따라 입찰공고 하고, 계약절차를 준용하여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가치 있는 부산품³⁾ 등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발주청에 소유권이 있으며, 계약상대자가 공사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, 발주청은 그 만큼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.

3) 부산품 : (부산물, 부제품) "부산물"이란 제품의 제조·가공·수리·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·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.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4230호, 2016.5.29, 일부개정]

따라서 ○○○○산업단지 ○○·○○ 0지구 조성사업 시공 중에 발생하는 가치 있는 부산물(암석)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발주청에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며, 위 관서(○○○○○○)에서는 암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했다.

그런데 위 관서(○○○○○○)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2015. 9. 17. 시공 중에 발생하는 가치 있는 부산물(암석)에 대해서 매각 공고를 하지 않고, 공사장 인근 토석채취업자에게 반입여부를 문의하여 운반비가 최소로 소요되는 ○○○○○○○(주)에게 2,017백만원 상당(총399,984m³)을 사토 처리하였다.

결국 위 관서에서는 시공 중 발생한 부산물(암석)을 사토처리 하려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부적절한 보고에 따라 부산물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여 예산절감의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시정] ○○○○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검토하여 예산 절감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게 부실벌점 등의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